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5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유정인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 
추가하고 공공공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 
설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 
학교시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을  
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만약 학교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, 의회 의견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, 이러한 변경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, 공공공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하여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